##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90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신영대・임오경・안호영

홍기원 · 이학영 · 정을호

염태영 · 박희승 · 김기표

김윤덕 • 한준호 • 천하람

문금주 · 노종면 · 김영환

추미애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제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음. 특히 경제부총리는 환율 방어와 외환시장 정책을 총괄하는 직위에 있기에 직무와 이해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금융상품을 거래함에 있어 내부정보이용을 금지 하는 등의 특정 행위만을 규제하고 있어, 고위공직자가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금융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신규로 매수하거나 추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고,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경우 일정 기한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등을 통해 처분하도록 함으로 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4조의18 신설).

법률 제 호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에 제14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18(기관별 직무관련 금융상품 거래 제한) ①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직중인 공공기관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직무관련 정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매수·인수하거나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유증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항의 금융상품을 취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신탁제도(백지신탁 등)를 통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 ② 각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금융상품 취득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한방안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22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2. 제14조의18을 위반하여 금융상품을 거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직 중인 고위공직자 등으로 서 제14조의18에서 정한 금융상품을 보유한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매각하거나 신탁 등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14조의18(기관별 직무관련 금
	용상품 거래 제한) ① 국가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재직중인 공공기관의 직무
	와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직무관련 정보에 영
	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
	<u>규로 매수·인수하거나 추가로</u>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유증 또는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불가
	피하게 제1항의 금융상품을 취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
	시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
	체의 장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이 법
	에서 정하는 신탁제도(백지신
	탁 등)를 통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22조(징계 등) 공직자윤리위원 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 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 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 구할 수 있다.

1. ~ 21. (생 략)

<신 설>

2	ㅏ 기관	실 장	은 저	1항에	따
라 소	<u>속</u> 공	'무원의	] 금	융상품	취
득을	제한	하려는	경-	우에는	ユ
제한	방안을	· 관할	공격	시자윤리	기위
원회여	에 보그	고하여여	야 한	다.	

-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방안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징계 등)
(-2 2 2 2 2 4 )

1. ~ 21. (현행과 같음) 22. 제14조의18을 위반하여 금

용상품을 거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